강릉시의회 공고 제2021-27호

「강릉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강릉시의회 입법에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1월 1일

강 룽 시 의 회 의 장

강릉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○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다중 이용시설 이용을 도모하고 시민의 사생활 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 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가. 예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나. 공중화장실 등 상시점검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다.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의 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라. 신고체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마. 불법촬영기기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- 바.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)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 · 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:

- 주소: (25522)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(홍제동) 강릉시의회

- 전화: 033-640-4100

- 팩스: 033-640-4070

붙임 강릉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1부.

강릉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강릉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다중이용시설"이란 공중화장실등, 민간화장실, 공중위생영업소 등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.
 - 2. "공중화장실등"이란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및 제2 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.
 - 3. "민간화장실"이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.
 - 4. "공중위생영업소"란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중 위생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.
 - 5. "불법촬영"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.
 - 6. "불법촬영기기"란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제1 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.

- 제3조(책무) 강릉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강릉시민(이하 "시민"이라 한다)이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4조(예방계획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 (이하 "예방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
 - 2.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사항
 - 3.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시장이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5조(공중화장실등의 상시점검)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등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- 제6조(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의 점검 지원) 시장은 민간화장실의소유자(시설관리인을 포함한다) 또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시설 내 불법촬영기기 점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협력하여 지원할 수 있다.
- 제7조(실태조사)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제8조(신고체계 등 구축) ①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 설치가 의심되는

다중이용시설을 발견한 경우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.

- ②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등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- 제9조(교육 및 홍보) ① 시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·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.
- 제10조(재정지원)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

□법규명	:	
○ 성명	를(단체	명) :
○ 주		소 :
(여	라	처·

제ㆍ개정안 내용	의	견	비고